의정부우체국 제2024-2호

2023년도 제7회 의정부우체국 주관
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 최종합격자 공고

2023년도 제7회 의정부우체국 주관 공무직 상시계약집배원 선발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
의 정 부 우 체 국 장

1. 최종 합격자명단

응시번호	합격여부
의정부001	합격

※ 최종합격자 채용포기, 결격사유,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2. 최종합격자 등록 안내

가. 제출서류

1) 주민등록초본(상세) 1통
2) 운전면허증 사본1통
3) 채용신체검사서 1통(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의료기관)
※ 2019.12.24.자로 개정된 양식으로 발급 (붙임 서식 참조)
4) 신원보증보험 1통
- 가입보험금 : 2,000만원 (특별약관Ⅰ,Ⅱ포함)
- 가입기간 : 1년 (직종 : 상시계약집배원)
- 피보험자 : 의정부우체국 (127-83-00079)
5) 반명함 사진 1매

※ 채용 일정은 개별통보되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[별지 제1호서식]

(앞쪽)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분	② 시험실시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명		사 진 (3.5㎝ × 4.5㎝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시						
⑦ 재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	

검 사 내 용

키		cm	체중		kg
허리둘레		cm	혈압		
(교정)시력	좌: ( ) 우: ( )	색신 (색각)		(교정)청력	좌: ( ) 우: ( )
종양질환			이비인후질환		
호흡기질환			심혈관질환		
소화기질환 (간질환포함)			신장/비뇨기계질환		
내분비질환			혈액질환		
신경질환			피부질환		
근골격계질환			안질환		
정신질환			흉부X선 검사		
기타		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 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 ]합격 [ ]판정보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 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

(뒤쪽)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 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 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 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 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2. "검사 내용" 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 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 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  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  나.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  -(작성 예시) 임산부인 경우 "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" 라고 적습니다.
3. "검사 결과 합격 여부" 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"√"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 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 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  -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지 않음
  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'만성골수성백혈병'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 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 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  ※ 응시자의 질환이 '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'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